

Ver. 2022

LG화학 준법 지침  
CODE of CONDUCT



LG화학 준법 지침

CODE of CONDUCT

## CONTENTS

<b>01.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b>	<b>11</b>
제품 안전 및 규격	12
환경 안전	13
<b>02. 구성원에 대한 책임</b>	<b>15</b>
공정한 인사 관리	16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17
안전한 작업환경	19
<b>0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b>	<b>21</b>
경쟁사와의 관계	22
경쟁 정보의 수집	23
협력사와의 관계	25
뇌물 제공 및 부정청탁 금지	26
<b>04. 거래 질서의 존중</b>	<b>29</b>
수출입 규제	30
분쟁 광물 관리	31
<b>05. 정보 및 기술의 보호</b>	<b>33</b>
개인 정보 보호	34
LG화학의 영업 비밀 보호	36
타인의 지식 재산 보호	37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38



# CEO Message

존경하는 LG화학 임직원 여러분,

급변하고 치열해지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LG화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고객, 협력사, 구성원, 주주, 여러 다양한 사회 구성원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LG화학은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Sustainability 전략을 세워 이른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준법경영 체제 정비, 준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맡은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규들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반영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LG화학 준법 지침’은 우리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단순히 임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LG화학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우리와 회사,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번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지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2022. 4월 (주)LG화학  
CEO 신 학 철 부회장

#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준법 지침

##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 「LG화학 준법 지침」은 2016년에 제정된 그룹 준법 지침을 참고하여 LG화학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 LG화학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한 준수 사항,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예시를 활용하여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왜 지켜야 하나요?

- 「LG화학 준법 지침」은 LG화학 임직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원칙이자 약속이며,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윤리 위반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 임직원은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을 신뢰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LG화학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준법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 우리는 고객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그 바탕으로 정해진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험을 예방하며 환경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요?

- 이 준법 지침은 LG화학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준법 지침

## 우리의 의무

### 01 모든 임직원의 의무

- LG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 세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업무와 연관되는 회사 정책과 절차 및 각종 사내 규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상사나 유관부서에 자문을 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준법 지침이나 회사 정책에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02 조직 책임자의 의무

- LG화학의 모든 조직 책임자는 소속 직원이 준법 지침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법 지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의문을 가질 경우에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솔선수범하여 준법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들과 열린 자세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합니다.

### 03 문화적 차이 극복

- 해외출장 혹은 해외근무에 나서기 전에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 한 가지 분명하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현지 법규 환경은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확인 즉시 조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준법 지침

##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규를 포함하여 준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과 회사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도 가능합니다.
- 회사는 형사처분, 행정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 포함), 몰수 등 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 거래 중단, 그리고 기업 이미지 손상과 기업 신용 하락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임직원 개인 역시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꼭!

#### 01 회사 또는 임직원이 준법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직 책임자와 상의하십시오.
-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무실과 상의하십시오.

#### 02 불이익 조치가 우려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 LG화학은 준법 지침 미준수 행위를 보고한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임직원은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는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서부터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의 일반적인 괴롭힘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준법 지침 미준수 행위를 보고한 결과로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이 될만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유관부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임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법 지침 위반 행위
- 타인에게 준법 지침 위반을 요구하는 행위
- 준법 지침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04 준법 지침 미준수 행위는 아래와 같은 변명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 “고객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 “회사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 LG화학 Compliance 원칙



##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 제품 안전 및 규격을 준수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을 확보합니다.
-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합니다.



## 구성원에 대한 책임

-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여 업무와 작업에 임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

-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련 사규 및 지침을 준수하며, 뇌물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거래 질서의 존중

-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정보 및 기술의 보호

- 정보 및 기술의 보호 개인 정보와 무형 자산을 보호합니다.
- LG화학의 지식 재산권인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어, 특허, 저작물, 기타 지식 재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당사 및 업무 관련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01

##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제품 안전 및 규격

환경 안전

## 제품 안전 및 규격

- 설계, 제조, 검사, 마케팅,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 제품은 국내외 법규 및 규정은 물론 당사의 품질 및 규격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❶ 제품 안전 및 규격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보다 더 강화된 당사 자체의 안전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❷ 특정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생략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제품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모든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❸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유리한 데이터만을 취하거나, 불완전한 조건 하에서 검사하거나, 검사 프로토콜을 임의로 간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 ❹ 협력사가 납품하는 원자재 또는 부품이 회사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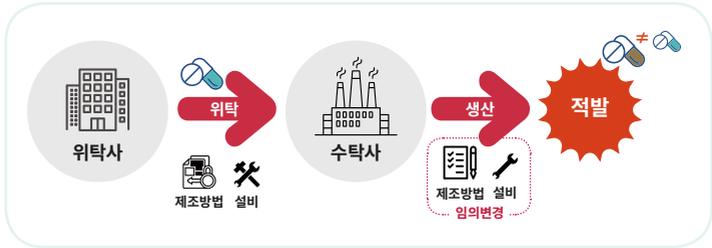
### 이것만은 꼭!



- ❖ **비슷한 유형의 품질 이슈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특히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 » 제품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리콜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제품의 설계, 제조상 결함 또는 경고 문구의 미비 등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유관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률 및 규정 등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관 련 사 례

위·수탁 제조 시 수탁사의 제조방식 임의 변경



보건당국 불시 점검 시 적발 → 제조·판매 중지 / 과징금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의약품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제조 방법과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품질 미달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보건당국이 적발하여 제조와 판매가 중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환경 안전

-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 체계적인 환경안전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 ①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 외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환경안전보건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②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합니다.

- ③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④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지역사회의 환경안전보건 개선을 적극 지원합니다.
- 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합니다.

이것만은 꼭!



법규,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 » 법으로 정해진 각종 환경 및 안전보건 기준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을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내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 » 법령 및 기준 등의 해석이 필요하면 유관부서나 법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기준 위반 및 조작 적발



환경 기준 위반 및 조작 → 리콜 / 벌금 / 형사처벌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배출가스를 자가 측정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를 조작하여 정상 성적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적발

# 02

## 구성원에 대한 책임

공평한 인사 관리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안전한 작업환경

## 공평한 인사 관리

임직원의 채용이나 진급 등 인사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해당 업무의 특성, 개인의 경력과 성과 등 정당한 요인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①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에 의거하여 능력과 업적에 따라 평가받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②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용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취향, 장애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근거로 임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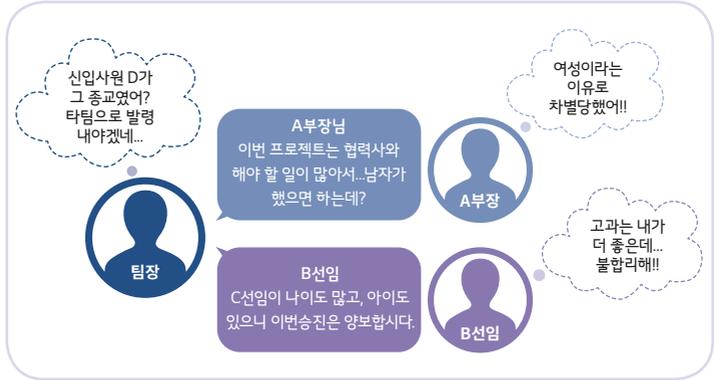
### 이것만은 꼭!



- ❖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 연령, 배경을 지닌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 특정 요건이 필요한 직무는 정식 업무 기술서에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상당한 타당성이 필요합니다.
- ❖ 특정인이나 업체로부터 권유받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 » 별다른 근거 없이 또는 부당한 근거를 들어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은 공평한 기회 제공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 현지 법규에 맞는 정책이나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 » 회사 방침과 차이가 나는 해외법인의 내부 인사규정이나 정책은 반드시 명문화하고, 현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비 업무적 요소를 원인으로 한 차별행위



- 성별, 나이, 종교 등 비 업무적 요소를 원인으로 평가, 특정 업무 배재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항상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합니다. 누가 듣더라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다른 동료를 괴롭히거나 위화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① 연령,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이나 출신 지역, 장애 등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빌미로 타인을 기피하거나 조롱, 따돌림 또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 ② 성희롱이나 성과 관련한 불쾌한 도발행위, 언급, 제안도 금지됩니다.
- ③ 괴롭힘이나 차별,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직 책임자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도록 합니다.

### 이것만은 꼭!



- ❖ 함께 일하는 구성원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부감이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 ❖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서 특히 언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를 대표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참석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안전한 작업 환경

-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위험성 평가, 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발생한 경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① 환경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십시오. 비용, 납기, 관행 등을 이유로 환경안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 ② 모든 임직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환경안전사고의 유형을 확인하고 환경안전 관련 규정과 대책, 안전 수칙 및 응급 상황 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 ④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 ⑤ 본인 또는 동료가 건강 문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태인 경우에는 부서장과 상의하여 적절히 조치하십시오.

### 이것만은 꼭!



#### ❖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 아차 사고(Near-Miss)를 지속 발굴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고장 사고 사례 수평 전개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 » 모든 임직원은 근무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인원은 절대 준수 7대 안전 수칙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당사의 환경안전 제도/정책을 사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해 주십시오.

»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보고를 해주십시오.

» 사고 조사 시 사고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 관 련 사 례

### 개인 보호구 미착용 작업 실시



- 작업 상황에 따라 알맞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적발 시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

# 03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

경쟁사와의 관계

경쟁 정보의 수집

협력사와의 관계

뇌물 제공 및 부정청탁 금지

## 경쟁사와의 관계

- 공정거래 법령 위반으로 비칠 수 있는 경쟁사와의 부당한 접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 대외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공을 장려합니다.

### 준수 사항

- ❶ 경쟁사와의 합의나 양해 등은 반드시 법무실에 검토를 요청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❷ 회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확정된 의제가 없는 경쟁사와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쟁사와의 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경쟁사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 시스템을 통해 경쟁사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❸ 경쟁사와의 회의에서 가격, 생산량 협의 등의 위험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석 후 유관부서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 ❖ **법무실 검토 대상은 경쟁사와의 정식 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 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물론, 구두나 약속 계약, 암묵적 합의 또는 양해 역시 체결 시에는 반드시 법무실의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 ❖ **담합의 대상은 최종 판매 가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가격 담합뿐 아니라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입찰, 설비, 거래량, 시장 분할 등)는 모두 담합의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명시적으로 담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담합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시 법상 경쟁 법 위반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 카르텔은 다양한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쟁사와 공동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불법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



○○업 정기총회

안전 1. 10% 가격 인상의 건  
 2. 회사 별 인상 시점 논의의 건  
 3. 업계 동향 및 회사 현안 공유의 건

가격  
담합

정보  
교환

- 가격을 함께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가격, 가격정책, 원가 등 “경쟁 정보”의 교환행위 역시 담합 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담합으로 오인될 행위는 삼가야 함

## 경쟁 정보의 수집

- 경쟁 정보는 정당한 정보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시,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키고 경쟁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① 공개된 정보 또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서 정식으로 제공해 준 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조사 기관, 컨설팅 업체, 기타 전문가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 ❸ 경쟁사가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기밀정보가 있을 때에도 해당 협력업체에게 그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 ❹ 법률이나 계약상,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을 통해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수집하지 마십시오.
- ❺ 경쟁사 출신을 채용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그에게 경쟁사의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문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꼭!



- ❖ **경쟁사의 정보를 주겠다는 제안을 무작정 수락하지 마십시오.**
  - » 경쟁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또는 경쟁사의 임직원이었다면 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의하십시오.
- ❖ **정보의 출처와 입수 경로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출처와 입수 경로 등이 불분명한 정보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 련 사 례

제3자로 부터 제공받은 불법적인 경쟁 정보 수집



- 컨설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3자가 불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함

## 협력사와의 관계

모든 협력사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정할 때, 관련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❶ 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및 평가요소 등을 협력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❷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 종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❸ 구매 및 영업마케팅 등의 기획업무를 할 때, 회사 내부규정을 반드시 참고하고, 유관부서와 반드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❹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유관부서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❺ 두 개 이상의 협력사와 동시에 만나 거래처 선정, 지역분할,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 이것만은 꼭!



- ❖ **협력사와의 계약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을 인지하십시오.**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속적 거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 **당사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협력사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뇌물 제공 및 부정 청탁 금지

-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내외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준수 사항

- ❶ 국내외 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 ❷ 국내외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❸ 거래 상대방의 부패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당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검토 및 체결에 앞서 당사 법무 포탈에서 반부패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 ❖ **현지 관례라는 명목으로 안일하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 뇌물죄 등 부패 관련 범죄는 전 세계에서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당사자 및 회사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 또는 거래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위험 신호 포착 시 반드시 유관부서의 자문을 받으세요.**
  - » 자문을 받아 위험 저감 조치를 하거나, 계약 포기·중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 거래 상대방이 공직자 등 또는 외국 공무원의 요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 ✓ 거래상대방 중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법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거래 상대방이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출처 불분명한 비공개 자료의 제공을 제한한 경우
- ✓ 그 외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법령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관 련 사 례

부정한 금품 및 편의제공



-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04

## 거래 질서의 존중

수출입 규제

분쟁 광물 관리

## 수출입 규제

모든 임직원은 수입·수출 통제, 통관 절차, 외국환거래, 무역제재와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1 당사가 판매 또는 구매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수출·수입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통관 절차 진행시 국내외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문이 필요하면 유관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4 수출 품목의 예정 또는 최종 목적지가 주요 제재 국가에 해당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 ❖ 수출 통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존 수출 품목은 회사 통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출 품목은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출 통제 대상을 당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수출허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자에 등재된 자는 아니더라도, 제재 대상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지양해야 합니다.
  - » 부득이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과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제재법규 준수 약정서(Sanction Compliance Statement)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제재 대상 국가로 재 수출된 제품



- 판매된 제품이 가공되거나 재수출되어 최종 목적지가 제재 국가인 경우, 이를 확인하여 거래 중지, 신고, 허가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분쟁 광물 관리

모든 임직원은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준수 사항

- 1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환경오염, 인명피해,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분쟁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공급망 내 원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제품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분쟁광물의 원산지 또는 제련소 정보에 대한 대외 공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 ❖ 당사의 「협력사 행동 규범」에 기초하여, 협력사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체계 적정성 검증,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기존, 신규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행동 규범 준수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 분쟁광물에 관한 당사 정책, 협력사에 대한 실사, 원산지 등 공시 의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사 례

분쟁광물 지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은 글로벌 기업이 NGO에게 피소



- 분쟁광물 지역에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부품을 만든 A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글로벌 기업 G사에게 부품을 납품하였음
- 인권보호 관련 NGO가 G사의 제품이 분쟁광물 지역에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취득한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UN에 고발하고 제재를 요청하였음
- G사는 피해의 원인이 A가 납품한 부품에 있음을 주장하며 A에게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A가 응함에 따라 재정적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05

## 정보 및 기술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

LG화학의 영업 비밀 보호

타인의 지식 재산 보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및 공개를 방지하여야 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회사 기준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를 맡긴 개인 정보 제공자들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제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❶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❷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❸ 개인 정보에 대해 알 필요가 없거나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 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 ❖ 문서 및 자료를 사내외에 공유할 때는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특별한 주의 없이 다루는 일반 문서와 자료에도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삭제, 익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고객 개인 정보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도 해당 업무 완료 시 완전히 삭제합니다.

관련 사례

문서 및 자료 사내·외에 공유



- 임직원에게 선물을 배송을 위해 취득한 개인 정보(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부서)를 사내외로 공유할 경우 익명 처리 or 삭제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 면접, 세미나, 강의 등을 위해 취득한 개인 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가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PC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 LG화학의 영업 비밀 보호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 준수 사항

- ❶ 모든 임직원은 LG화학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실수로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❷ 영업 비밀은 허락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LG화학의 임직원이라도 접근 권한이 없다면 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❸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영업 비밀 역시 법규 및 계약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 이것만은 꼭!



- ❖ 영업 비밀은 사용이 허락된 임직원이 정해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 LG화학의 임직원이라도 영업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범위를 넘어서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공개된 장소에서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영업 비밀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업 비밀을 발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례

#### 협력사의 영업 비밀 유출 사례



-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협력사의 영업 비밀을 임의로 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지식 재산 보호

제3자의 아이디어, 발명, 상표, 디자인, 저작물, 기타 지적 산물은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해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수 사항

- ❶ 입수했거나 사용할 계획인 자료, 정보, 저작물 또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다른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❷ 제3자가 보유한 기술, 디자인, 저작물 및 정보는 반드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얻은 후에 사용하십시오.
- ❸ 회사가 라이선스 받은 지식 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상의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꼭!



- ❖ 무상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 자료도 라이선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상의 사진, 음원, 영상물, 기타 저작물이라도 라이선스 없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 ❖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에도 활용 시 허락된 사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이선스 계약상 조건에 따라 지식 재산의 공개 또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규 투자 또는 사업 추진 시 지식 재산 침해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정 사업부 또는 과제 투자 심의 시 지식 재산권 침해 이슈가 있는지 유관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위 반 사 례

### 라이선스 받은 기술에 기초한 특허 출원



- 타사로부터 라이선스 받은 기술을 사용하면서 획득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량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법규 및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필요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당사 및 업무 관련 회사(계열회사, 고객사, 협력사, 프로젝트 상대방 및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준 수 사 항

- ① 모든 임직원은 당사 및 업무 관련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예방 지침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는 시기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유가증권의 거래를 지양해야 합니다.
- ③ 언론, 규제 기관 등에서 당사의 경영 재무 상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직접 응하지 말고 유관부서의 자문을 받아 관련 담당자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다른 법인을 통해서도 거래해서는 안 되며, 퇴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미공개 정보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우선은 미공개 정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또는 제공 전에 유관부서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미공개 정보: 신규 연구 개발, M&A, 추정 결산실적 정보 등 투자판단 영향 정보 등을 의미하며,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포함함

관련 조항 및  
위 반 사 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



- A사 핵심 임원들이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前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음

LG화학 준법 지침

2022년 4월 발행

발행인 LG화학

편집인 LG화학 법무실 / 준법지원팀

문의처 02) 3773-7888

Copyrighting@LG화학/법무실/준법지원팀

본 지침서는 LG화학 임직원들의 업무 활용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LG화학 준법지원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 배포, 사용 등을 금합니다.



